

## 일본의 농림수산물 지리적 표시 보호법제

### I. 서언

지리적 표시(Geographical Indication)는 상품의 특정 품질, 명성 또는 그 밖의 특성이 본질적으로 지리적 기원에서 비롯되는 경우, 국가의 영토, 지역 또는 지방을 원산지로 하는 상품임을 명시하는 표시로서,<sup>1)</sup> 단순한 출처표시(Indication of Source)나 원산지 명칭(Appellation of Origin)을 포괄하는 보다 광의의 개념이다.<sup>2)</sup> 상품의 지리적 출처에 관한 명칭을 상업적 오남용으로부터 보호하고자 하는 제도는 국가별로 다양한 형태로 오래 전부터 시행되어 왔다. 이러한 지리적 표시를 ‘세계무역기구 무역관련지적재산권협정’(이하 ‘WTO TRIPS협정’이라 함)에서 국제조약으로는 최초로 규정하게 되었고, 동 협정에서 회원국은 상품의 진

정한 지리적 원산지에 대하여 수요자의 오인을 야기하는 허위 출처표시와, ‘산업재산권 보호를 위한 파리협약’(1967) 제10조의 2에 의한 부정경쟁행위를 금지할 수 있는 법적 수단을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다.<sup>3)</sup> 또한 포도주와 주류의 지리적 표시에 대하여 추가적 보호를 규정하고 있으며,<sup>4)</sup> WTO 회원국들은 원산지 국가에서 지리적 표시로 보호되는 해당 제품에 대하여 자국에서도 보호할 의무가 있다.<sup>5)</sup> 즉, 지리적 표시로 보호되기 위해서는 원산지의 국내법에 의한 보호가 선행되어야 한다. 국가별로 지리적 표시의 보호형태는 다양하며, 크게 부정경쟁방지제도에 의한 보호, 상표제도에 의한 보호, 독자적 등록 제도에 의한 보호, 행정제도에 의한 보호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일본은 2006년 상표법 개정을 통하여 지

1) WTO TRIPS협정 제22조 제1항.

2) 출처표시는 단순히 어느 상품이 출처표시에 의하여 특정장소에서 기원한다는 조건을 충족하면 사용할 수 있으며, ‘상품의 허위출처표시 방지에 관한 마드리드협정’에서 규정하고 있다. 원산지명칭은 품질 면에서 상품과 생산지역 간 관련성이 존재하며, 기후·토양·전통적 생산방식과 같은 지리적 기원에서 비롯된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으며, ‘원산지명칭 보호와 국제등록에 관한 리스본협정’에서 규정하고 있다.

3) WTO TRIPS협정 제22조 제2항.

4) WTO TRIPS협정 제23조

5) WTO TRIPS협정 제24조 제9항.

리적 표시를 지역단체상표로 등록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sup>6)</sup> 부정경쟁방지법, 주세보전 및 주류업조합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지리적 표시를 보호해 왔다. 2014년 6월 18일에는 「특정농림수산물등의 명칭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지리적 표시법’이라 함)<sup>7)</sup>을 제정하여 2015년 6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본고에서는 일본 지리적 표시제도 개관을 통하여 지리적 표시법의 제정 배경을 살펴보고, 농림수산물 지리적 표시제도에 대하여 설명하기로 한다.

## II. 일본 지리적 표시 관련 제도

### 1. 상표법상 지역단체상표제도<sup>8)</sup>

#### (1) 도입 배경

그간 일본에서는 지리적 표시를 직접적으로 보호하는 제도는 없었으나, 지리적 명칭 보호의 필요성과 국제적 보호의 동향에 따라 2005년 6월에 상표법을 개정하여 지리적 표시와 상품의 명칭이 결합된 지역단체

상표로서 등록할 수 있는 상표법상 제도를 도입하였고 2006년 4월부터 시행하고 있다.<sup>9)</sup> 기존 상표법에 따르면 지리적 명칭이 산지표시에 해당되어 상표 등록이 제한되고, 지역의 경제적 가치가 있는 특산품이 보호되지 못하였으므로, 지방자치단체의 요구에 따라 지역 특산품 등을 보호하는 한편, 지역 브랜드 보호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상표법 개정이 필요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상표법상 제도의 목적은 일본 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것이었기 때문에 외국 상표 출원자가 해당 상표를 등록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는 문제점도 제기되고 있다. 최근 TPP협정 협상을 진행하면서 일본은 지리적 표시를 직접적으로 보호하는 새로운 제도를 채택할 것을 고려하였고, 이는 농수산물 등에 대한 지리적 표시법의 제정으로 이어졌다.<sup>10)</sup>

#### (2) 지역단체상표의 등록 요건

지역단체상표는 상품의 산지나 서비스의 제공 장소를 나타내는 지리적 명칭과 상품 및 서비스 명칭의 결합 표장으로 구성된다.

6) 일본 상표법 제7조 제2항.

7) 특정농림수산물등의 명칭 보호에 관한 법률 (평성26년 법률 제84호).

8) 특허청, 국내외 지리적 표시제도, <[www.kipo.go.kr](http://www.kipo.go.kr)> 참조.

9) 일본 상표법 제7조 제2항.

10) Nami Togawa, Report on the new Japanese Law on protection of geographical indications (2014.8.14), p.1, <<https://www.aippi.org/download/committees/220/GR220japan.pdf>> 참조.

이 때, 상표의 주지성이 요구되어 상품과 관련된 지리적 명칭이 수요자에게 널리 알려진 경우에 해당 지리적 명칭을 등록하여 상표법상 배타적 사용권을 부여하며, 동 권리는 양도 및 이전이 엄격하게 제한된다.<sup>11)</sup> 지역단체상표는 사업협동조합 등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만이 등록 주체가 될 수 있고, 지역단체상표의 상표등록을 받은 자는 단체 구성원에게 등록된 지역단체상표를 사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생산되는 상품 및 제공되는 서비스업이 당해 지역과 자연적, 역사적, 풍토적, 문화적, 사회적 관련성이 있음을 증명하여야 하고, 상품 또는 서비스를 표시하는 것으로서 수요자 사이에 널리 인식되어야 한다.<sup>12)</sup>

### (3) 등록효과 및 제한

지역단체상표의 존속기간은 보통의 상표권과 마찬가지로 등록일로부터 10년이다. 지정된 상품 및 서비스업에 대하여 권리자는 사용금지청구권, 손해배상청구권 등 독점적·배타적 권리를 갖는다. 다만, 지역단체상표의 상표등록출원 이전부터 선의로 부정경쟁의 목적없이 사용되고 있는 상표

에 대해서는 주지성 요건과 관계없이 계속하여 사용할 권리를 인정하고 있다.<sup>13)</sup>

### (4) 등록무효 또는 취소

지역단체상표는 등록이 된 이후에도 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무효 또는 취소의 대상이 된다.<sup>14)</sup> 지역단체상표의 사후적 무효사유로는 지역단체상표와 관련된 등록 상표가 주지성을 상실한 경우, 상표권자가 조직변경 등에 의하여 상표 주체로서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는 경우 등이 있다. 또한 3년 이상 사용되지 않은 경우 경우, 상표권자 및 사용권자가 출처 혼동 또는 품질 오인을 야기한 경우에는 누구든지 지역단체상표의 취소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 2. 부정경쟁방지법

일본의 부정경쟁방지법은 상품·서비스·그 광고 또는 거래에 사용하는 서류·통신에 그 상품의 원산지, 품질, 내용, 제조방법, 용도, 수량 또는 그 서비스의 품질, 내용, 용도 또는 수량에 관하여 오인시키는 표시의

11) 일본 상표법 제7조의2에서는 '주지성'을 "상표를 사용한 결과 자기 또는 구성원의 업무에 관련되는 상품 또는 서비스를 표시하는 것으로 수요자 사이에 널리 인식됨"으로 정의하고 있다.

12) 일본 상표법 제7조 제2항.

13) 일본 상표법 제32조의2 제1항.

14) 일본 상표법 제46조 제1항 제6호.

사용을 감시하고 있다.<sup>15)</sup> 따라서 대중을 기만하는 원산지 명칭 표시행위는 부정경쟁행위로 규제 대상이 된다. 오인야기 행위에 의하여 영업상 이익을 침해받은 자는 침해의 중지 또는 예방 청구,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고, 부정한 목적으로 오인야기 행위를 한 자에 대해서는 형사벌을 부과할 수 있다.<sup>16)</sup>

### 3. 주세보전 및 주류업조합등에 관한 법률

일본산 포도주와 증류주의 산지 중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것을 지리적 표시로 사용하고, 당해 산지 이외의 지역을 산지로 하는 포도주 또는 증류주에 대해서 지정된 지리적 표시의 사용을 금지한다.<sup>17)</sup> 지리적 표시에 관한 표시기준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기준의 준수를 지시 및 명령하고, 명령에 위반하는 경우에는 50만엔 이하의 벌금과 면허취소를 부과할 수 있다.<sup>18)</sup>

## III. 일본 농림수산물 지리적 표시제도

### 1. 개요

지리적 표시제도는 지역에서 육성된 전통과 특성을 보유하는 농림수산물 및 식품 중, 품질 등의 특성이 산지와 결부되어 있어서 그 관련성을 특정할 수 있는 명칭(지리적 표시)이 부착된 것에 대하여 그 지리적 표시를 지식재산으로 국가에 등록할 수 있는 제도이다. 동 제도의 목적은 생산품에 대한 적절한 평가와 재산적 가치를 유지함으로써 지역의 지식재산 등 생산자의 이익을 보호하는 한편, 고부가가치의 농림수산물등에 대한 신용을 확보하여 수요자에게도 이익이 되고자 하는 것이다.<sup>19)</sup>

### 2. 지리적 표시의 대상과 요건

지리적 표시의 등록 및 규제 대상이 되는 농림수산물등의 범위는 식용으로 제공되는 농림수산물과 식음료제품이며, 그 밖에 농

15) 일본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항 제13호.

16) 일본 농림수산물, 지리적 표시보호제도에 대하여, 2012.3, p.14.

17) 전제서, p.10. 2012년 기준으로 국세청장이 지정한 주류 산지는 IKI, KUMA, RYUKYU, SATSUMA, HAKUSAN 의 5개이다. <<http://www.maff.go.jp/j/shokusan/tizai/other/pdf/siryos3.pdf>> 참조.

18) 일본 국세청은 최근 당정 재무금융부 합동회의에서 「주세보전 및 주류업조합등에 관한 법률」의 개정에 관하여, 순수 일본산 원재료를 사용하여 제조한 주류에만 ‘日本酒’ 또는 ‘Japanese Sake’ 라는 명칭을 붙일 수 있도록 개정하고 ‘日本酒’를 지리적표시제 대상으로 지정할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국세청, 일본세정동향 2015-6호, 2015.6.29.

19) 지리적 표시법 제1조.

림수산물과 가공품 중 시행령으로 규정한 13개 품목을 대상으로 한다.<sup>20)</sup> 다만, 「주세법」 제2조 제1항의 주류, 「의약품, 의료기기 등의 품질, 유효성 및 안전성 확보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의 의약품, 의약부외품, 화장품 및 재생의료제품등은 제외한다.<sup>21)</sup>

지리적 표시법의 특정 농수산물 등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첫째, 특정 장소, 지역 또는 국가를 생산지로 하여야 하며 둘째, 품질, 사회적 평가, 기타 확립된 특성이 같은 생산지에 기인한 것으로 볼 수 있어야 한다.<sup>22)</sup>

〈그림 1〉 지리적 표시법의 적용 대상 분류

<p>① 농림수산물(식용에 한함) (예시) 정제미, 육류, 버섯, 계란, 우유, 어패류, 보리, 감자, 콩류, 야채, 과일</p>	<p>③ 농림수산물(① 제외) 관상용 식물, 입목죽(立木竹), 공예농작물, 진주, 관상용 물고기</p>
<p>특정 농림수산물 등</p>	
<p>② 식음료품 (① 제외) (예시) 빵, 면류, 두부, 과자, 설탕, 소금, 조미료, 탄산수, 건어물, 대두유, 올리브유</p>	<p>④ 가공품 (② 제외) 사료*, 칠기, 죽제품, 정유, 목탄, 목재, 돛자리, 생사(生絲)</p>

\* 농림수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로 하여 제조 또는 가공한 것에 한함.

### 3. 등록절차

#### (1) 지리적 표시의 등록

농림수산물·식품의 생산·가공업자 단체는, 해당 생산품의 생산지 및 요구되는 품질 등의 기준을 기재한 신청서를 구비하고, 단체의 품질관리방법을 정하여 명세서, 생산과정관리 업무규정 등을 첨부하여 지리적 표시의 등록을 신청한다.<sup>23)</sup> 신청서에는 생산자단체의 명칭, 주소 및 대표자, 당해 농림수산물등의 구분, 농림수산물등의 명칭, 생산지, 특성, 생산방법, 기타 당해 생산품을 특정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sup>24)</sup> 신청이 접수되면 공시를 통하여 3개월간 제3자로부터 의견 제출기간을 설정한다.<sup>25)</sup> 의견서 제출기간이 종료되면 등록거부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전문가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고,<sup>26)</sup> 농림수산성대신에 의한 등록심사가 진행된다. 전문가 의견 청취과정에서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생산자단체 또는 의견서를

20) 지리적 표시법 제2조 제1항 1호-4호, 특정농림수산물등의 명칭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정령(政令) 제227호).

21) 주류에 대해서는 「주세보전 및 주류업조합등에 관한 법률」에서 등록할 수 있다. 일본 농림수산성, 지리적 표시보호 제도의 안내, <[http://www.maff.go.jp/j/shokusan/gi\\_act/outline/pdf/doc2.pdf](http://www.maff.go.jp/j/shokusan/gi_act/outline/pdf/doc2.pdf)> 참조.

22) 지리적 표시법 제2조 제2항.

23) 지리적 표시법 제6조 및 제7조.

24) 지리적 표시법 제7조 제1항.

25) 지리적 표시법 제8조 및 제9조.

26) 지리적 표시법 제11조.

제출한 제3자로부터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농림수산성의 심사를 통하여 등록거부 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지리적 표시 및 해당 단체를 등록하여야 한다.<sup>27)</sup>

## (2) 지리적 표시의 사용

등록된 생산자단체가 생산품의 신청서에 합치하도록 적절하게 품질을 관리하고 있는지 여부를 농림수산성에서 확인한 후에, 단체의 구성원인 생산자는 농림수산물 등 또는 그 포장, 용기, 송장에 대하여 등록된 지리적 표시를 사용할 수 있다.<sup>28)</sup> 이때, 해당 생산품에는 지리적 표시임을 나타내는 GI 마크를 부착할 수 있다.<sup>29)</sup> GI마크는 등록된 생산품의 지리적 표시와 병행하여 사용되며, 상품의 확립된 특성과 지역과의 관련성을 나타내는 진정한 지리적 표시 상품이라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다. 이러한 품질관리를 통하여 품질 기준을 준수하는 경우에만 시장에 유통될



수 있고, GI마크를 부착함으로써 다른 생산품과의 차별화를 도모할 수 있게 된다.

## (3) 등록거부 사유

생산자단체 또는 그 대표자에게 법률상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 생산과정 관리업무에 관하여 신청서와 명세서의 기재 내용이 상이하거나 생산과정 관리업무규정이 농림수산성이 정한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등록 신청된 대상이 특정 농림수산물 등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등록 신청된 명칭이 보통명칭이거나 대상을 특정할 수 없는 명칭 등의 경우에 등록이 거부된다. 또한 신청된 농림수산물 등 또는 이와 유사한 상품 또는 서비스업에 관련된 기존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명칭인 경우에도 등록이 거부될 수 있다.<sup>30)</sup> 등록이 거부된 경우에는 농림수산성 대신이 등록을 신청한 생산자단체에게 그 취지와 이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27) 지리적 표시법 제12조.

28) 지리적 표시법 제3조 제1항.

29) 지리적 표시법 제4조 (등록표장). GI마크가 일본의 지리적 표시 보호제도에 따른 것이라는 점을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커다란 태양을 배경으로 한 후지산과 수면을 형상화하고, 일본국기의 적색과 전통 및 격식을 나타내는 금색을 사용하여 일본다움을 표현하고 있다. 농림수산성, '지리적 표시법에 대하여 -특정농림수산물등의 명칭 보호에 관한 법률-', 2015.7, p. 5, <[http://www.maff.go.jp/j/shokusan/gi\\_act/outline/pdf/doc1.pdf](http://www.maff.go.jp/j/shokusan/gi_act/outline/pdf/doc1.pdf)> 참조

30) 지리적 표시법 제13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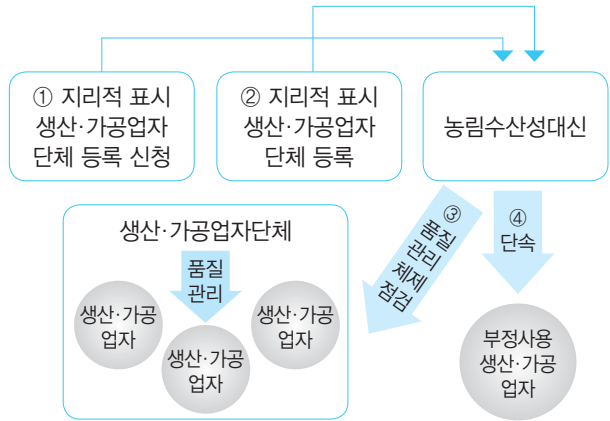
#### (4) 등록 후 품질관리

생산·가공업자 단체는 생산과정 관리업 무규정에 의거하여, 그 구성원인 생산·가공업자가 명세서상의 품질 기준에 적합한 생산을 하도록 필요한 지도, 검사 등을 실시한다. 농림수산성 대신은 생산과정 관리업 무가 적절하게 시행되고 있는지 정기적으로 점검한다.<sup>31)</sup>

#### (5) 부정사용에 대한 대응

등록된 단체의 구성원이 품질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생산품에 지리적 표시를 부착하여 제품을 판매하거나, 등록된 단체의 구성원이 아닌 생산·가공업자가 지리적 표시를 부착하여 제품을 판매하는 경우와 같이, 부정사용이 이루어지고 있는 사실을 인지한 자는 농림수산성에 그 사실을 통보하고, 농림수산성은 이를 단속하여 부정사용자에게 부정한 지리적 표시의 제거 또는 말소를 명령할 수 있으며, 동 명령에 응하지 않는 경우에는 벌칙을 부과할 수 있다.<sup>32)</sup> 따라서 소송 등의 부담이 없이 생산자가 자신의 브랜드를 보호할 수 있게 된다.

〈그림 2〉 지리적 표시법에 의한 등록 절차



#### 4. 다른 법률과의 관계

지리적 표시의 등록일 이전에 상표등록을 출원한 등록상표의 상표권자 또는 사용권한을 갖는 자가 해당 상표등록에 관련된 지정상품 또는 서비스업에 대해 당해 등록상표를 사용하는 경우, 지리적 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라는 이유로 상표의 사용이 배제되지 않는다.<sup>33)</sup>

지리적 표시가 신청된 농림수산물 등 또는 이와 유사한 상품 또는 서비스업에 관련된 기존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명칭인 경우에는, 지리적 표시 신청자가 등록된 상표권자 또는 전용사용권자이거나, 상표권자 또는 전용사용권자의 승낙을 받은 경

31) 지리적 표시법 제21조.

32) 지리적 표시법 제5조, 제28조-제32조.

33) 지리적 표시법 제3조 제2항 제2호.

우에 한하여 지리적 표시를 등록할 수 있다.<sup>34)</sup> 이는 지리적 표시법의 시행으로 기존 선행상표권자의 권리와 충돌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규정이다. 또한, 상표법에 제26조 제3항을 신설하여 특정 농림수산물의 명칭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상품 또는 상품의 포장에 지리적 표시를 부착하는 행위가 부정경쟁의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는 한, 해당 행위에 대하여 상표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도록 규정하였다.<sup>35)</sup>

## 5. 지리적 표시 보호제도 도입의 의의

지리적 표시제도의 시행으로 일정한 품질 기준을 갖춘 경우에만 지리적 표시를 부착할 수 있게 함으로써 지역 브랜드 상품으로서 국가가 이를 보증하여 차별화를 도모할 수 있고, 고품질에 따른 가격에도 반영되어 농어촌 및 지역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지리적 표시의 부정사용에 대하여 행정기관이 단속 및 제재를 부과함으로써, 생산자는 소송 등의 부담이 없이 브랜드를 보호할 수 있게 되고, 이는 전통적인 식문화의 계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 GI 마크를 부착하게 되면 이 마크가 요구하는

품질 기준을 준수하는 제품을 신뢰하여 구매 기준을 설정할 수 있으므로 이에 따른 소비자의 이익도 보호할 수 있다. 국제 무역의 측면에서는 진정성을 담보한 일본 특산품의 해외 진출에 기여하고 농림수산물 및 식품의 수출을 촉진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sup>36)</sup> 2015년 6월 1일 지리적 표시제도의 시행일로부터 3개월여가 경과된 가운데, 등록신청 후 형식심사를 완료한 멜론, 호박, 쇠고기 등 6개의 지리적 표시가 제3자의 견제출을 위하여 공시되어 있다.<sup>37)</sup>

## IV. 국내법에 대한 시사점

우리나라는 1999년 농수산물품질관리법에 의한 지리적 표시제도와 2004년 개정상표법에 의한 지리적 표시 단체상표제도를 병행하여 운영하고 있다.

### 1. 농산물품질관리법상 지리적 표시제도

우리나라는 1996년 WTO TRIPS협정 발효 이후 국제적인 지리적 표시 보호 동향에 대처하고, 농산물의 품질향상과 지역특

34) 지리적 표시법 제13조 제1항.

35) 일본 상표법(소화34년 법률제127호) 제26조 제3항.

36) Nami Togawa, 앞의 주 10, p.11.

37) [http://www.maff.go.jp/j/shokusan/gi\\_act/notice/index.html](http://www.maff.go.jp/j/shokusan/gi_act/notice/index.html).



화 산업으로의 육성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해 1999년 농산물품질관리법을 제정하고 지리적 표시 등록제도를 도입하였다.<sup>38)</sup> 동법은 농수산물과 그 가공품의 명성, 품질 및 기타 특징이 본질적으로 특정 지역의 지리적 특성에 기인하는 경우 해당 농수산물 및 그 가공품이 그 특정 지역에서 생산·제조·가공된 특산품임을 표시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특산품에 대해 지리적 표시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sup>39)</sup> 이에 따라 농수산물 및 그 가공품으로 지리적 표시의 정의개념에 합치하고, 대상 품목의 우수성이 국내외에서 널리 알려진 것으로서, 지리적 표시의 해당 지역에서 생산된 농수산물이거나 이를 주원료로 하여 해당 지역에서 가공된 것에 대하여 지리적 표시를 등록할 수 있다.<sup>40)</sup> 그러나 등록된 지리적 표시의 부정사용에 대하여 구제조치가 미흡하였으므로, 2009년 6월 법개정을 통하여 침해금지청구권, 손해배상청구권, 심판위원회 설치 등을 규정하고, 지리적 표시를 지식재산권으로서 독점적 배타권을 부여하게 되었다.<sup>41)</sup> 또한 지리적 표시를 부정사용하는 자

에 대해서는 벌칙규정을 두고 있다.<sup>42)</sup>

## 2. 상표법상 단체상표제도

지리적 표시 단체상표는 일정 지역에서 지리적 표시 상품을 생산제도 또는 가공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만으로 구성된 법인이 직접 사용하거나 그 감독 하에 있는 소속 구성원으로 하여금 자기 영업에 관한 농산물, 수산물, 그 가공품 등에 대하여 사용하게 하기 위한 상표이다. 지리적 표시 단체상표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지명이 아니라 해당 지역에서 생산·제조 또는 가공된 상품이 타 지역의 상품과 차별되는 품질, 명성 또는 그 밖의 특성이 존재하여야 하고, 지리적 환경 중 자연적·인적 요소 등 어느 하나와 상품의 특성 간에 연관관계가 인정되어야 한다. 지리적 표시 단체상표권자에게는 10년 존속기간의 독점배타권이 부여되어, 침해자에 대한 사용금지, 손해배상 등을 청구할 수 있고, 이후 10년마다 갱신할 수 있다.<sup>43)</sup>

38) 2011년 7월 수산물품질관리법이 폐지되면서 농산물품질관리법이 농수산물품질관리법으로 개정되었고, 적용 대상도 농산물 및 그 가공품에서 농수산물 및 그 가공품으로 통합되었다.

39)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제2조 제1항 제8호.

40)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제32조.

41)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제36조, 제37조 및 제42조.

42)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제119조 제3호 및 제4호.

43) 특허청, 앞의 주 8.

### 3. 일본 농림수산물 지리적 표시 보호제도의 시사점

일본은 「부정경쟁방지법」, 「주세보전 및 주류업조합등에 관한 법률」을 통하여 지리적 표시를 소극적으로 보호하여 왔으나, 2006년 상표법상 지역단체표장제도를 도입한 이후 9년 만에 농림수산물등에 대한 지리적 표시제도를 시행함으로써 보다 적극적인 지리적 표시 보호제도를 도입한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는 1999년 농수산물 및 농수산물가공품의 지리적 표시제도를 도입한 지 올해 16년을 맞이하여 2015년 7월 현재 169개 품목이 등록되어 있으나, 그동안 제기되어 온 미흡한 부분들에 대한 제도 개선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sup>44)</sup> 현재 지리적 표시 등록에 치중하고 생산자 단위에서의 품질관리 등 사후 관리가 미흡한 점, 소비자 인식이 낮고 거래활성화로 이어지지 않는 점, 상대적으로 등록절차가 간편한 단체상표제도와 이원화되어 있는 점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일본 지리적 표시법은 부정경쟁의 법리에 위배되지 않는 한 지리적 표시와 지역단체상표의 사용을 배제하지 않으며, 행정기관의 사후 관리와 부정사용 단속을 통하여 생산품의 품질 유지 및 지리적 표시의 주체인 생산·가공업자

의 권리 보호와 소비자 권익 향상을 도모하고 있다. 따라서 지리적 표시 등록제도를 선행 실시하였으나, 제도적 이원화로 인하여 개선방향을 모색하고 있는 우리나라는 앞으로 일본 제도의 운영 방향을 주시할 필요가 있다.

## V. 결어

지리적 표시는 지재권의 새로운 분야로 인식되어 왔으나, 기존에 부정경쟁과 사칭 통용의 법리에 의하여 어느 정도 규제가 가능하였으므로, 권리화에 대한 인식은 비교적 늦게 발달하였다. 국가별로 보호 방식도 다양하여, 각국은 사회·경제적 환경에 적합한 제도를 발전시켜 왔다. 우리나라는 지리적 표시 등록제도를 먼저 도입하고 단체상표에 의한 보호를 시작한 반면, 일본은 우리보다 늦게 지역단체상표를 통하여 지리적 표시를 상표권 법리로 보호해 오다가 지리적 표시 등록제도를 시행하게 되었다. 등록제도는 지리적 표시의 본질에 충실하여 농수산물과 그 가공품의 특성과 지리적 연계에서 비롯된 명칭 사용을 인정하는 반면, 상표제도는 적용대상이 보다 광범위하고 상표의 범위에서 인식된 표지에 상품의 특성을

44) 한국농어민신문, “지리적표시제 도입 16년, 개선방안 마련 본격화”, 2015.8.21, <<http://www.agrinet.co.kr/news/articleView.html?idxno=139343>> 참조.

가미하여 상표권으로서 보호하게 된다.

지리적 표시 등록제도는 EU를 중심으로, 단체상표제도는 미국을 중심으로 발전해 왔으나, 이원화된 제도를 운영하는 나라에서는 양 제도의 특징과 장단점을 상호 보완하여 추진해 나갈 필요가 있다. 다만, 국제적 보호 측면을 고려할 때, 국내에서 보호되는 지리적 표시만이 국외에서도 보호될 수 있으므로 국내적으로 지리적 표시 보호제도는 국내 생산·가공업자의 이해관계를 충분히 반영할 필요가 있다. 일본의 농수산물등

에 대한 지리적 표시 보호제도의 새로운 도입이 농수산물등에 대한 지리적 표시의 보호와 침해구제 뿐만 아니라 기존의 지역단체상표와의 조화를 도모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향후 추진 사례를 검토하여 우리나라 제도의 개선방향에 참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정명현**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연구교수)

#### 참고문헌

특허청, 국내외 지리적표시제도, <[www.kipo.go.kr](http://www.kipo.go.kr)>.

이동필, 최경환, 홍준표, 지역특화산업 육성을 위한 지리적표시제도의 운영실태와 발전방안,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11.

Nami Togawa, Report on the new Japanese Law on protection of geographical indications, 2014.8.14.

일본 농림수산업성 식료산업국신사업창출과, 地理的表示の保護制度について, 2012.3.

일본 농림수산업성, 地理的表示法について－特定農林水産物等の名称の保護に関する法律－, 2015.7.

일본 농림수산업성, 地理的表示保護制度の御案内, 2015.7.

